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55952 판결 [건물명도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559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205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묘연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8.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205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화성시 D 지상 적연와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84.78㎡를 인도하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7. 16.부터 위 단층주택 84.78㎡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더하여 보면, ○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화성시 H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한 결과 2018. 8. 6. B이 집주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1), ○ 그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2018. 10. 8. 위 같은 곳에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8. 10. 16. 발송송달을 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된 사실, ○ 그러나 당시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의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친 I이 지인인 B에게 부탁하여 위 주소지로 피고의 전입신고만을 하였던 것으로, 위 서류를 수령한 B이나 그 밖에 누구도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 ○ 제1심 법원은 2018. 10. 1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8. 10. 25. 같은 곳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8. 11.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한 사실, ○ 피고는 2020. 9. 25. 화성시 J아파트, K호 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4. 2. 2.경 피고의 위 실제 주거지까지 찾아와 서신(제1심의 사건번호를

적시하면서, 판결문 1통 놓고 가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을 붙여놓고 갔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4. 2.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분은 동거인이 아닌 B에게 송달된 것이고, B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이후에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한 것이 아닌바,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소 등의 신고를 실제와 일치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 알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6. 화성시 D 대 1,124㎡ 및 그 지상 적연와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84.78㎡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7. 8. 2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위 주택에 2018. 1. 8. 전입신고를 마친 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에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바, 위 주택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8. 화성시 H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제1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8. 7. 16. 이후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수영

1)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이 2018. 8. 6. 자신에 대한 소장 부분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도 집주인 자격으로 수령하였다.